

제 1207 호
1985.10.2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
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전 화 : 731-6111-3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716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 2

제 717 호 : 도시계획시설 (연구시설) 결정 2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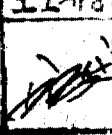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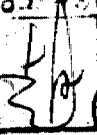

제 718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3

◎ 공 고

제 640 호 : 전문건설업면허취소 3

제 641 호 : 전문건설업영업정지 4

◎ 사 령

계	보도재정	공부	공보관	용
				광 우

공									
합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783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16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

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0. 25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㎡)		비고
			기정	변경	
변경	학교 (연남국교)	강남구염곡동 72 일대	11,068	9,441	해제 : 2,093 ㎡ 추가결정 : 466 ㎡

○ 첨부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17 호

도시계획시설 (연구시설) 결정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연구시설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 12

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0. 25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연구시설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연구시설	강서구 내발산동 18-11 일대	40,030	

* 도면 : 별첨 표시와 같음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18 호

1985. 10. 25
서울특별시장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이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나. 변경승인개요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
2. 사업주체 : 삼원주택건설(주) 대표이사 윤영목
3.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규모 (변경승인개요)
가. 위치 : 동작구 본동 455 번지 외 4 필지

주택종별	구 모				변경 구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축연면적 (㎡)	건축비율 (%)	용적율 (%)	사업비 (천원)
	층별	동별	을	으로							
연립주택	지층	1	.	.	을	2,734	783.73	3,134.92	29.8	86.0	1,501,210
	1층		12	12							
	2층		12	12	으로	2,676.45	766.84	3,039.88	29.76	84.92	1,489,590
	3층		12	11							

단, 3층면적은 739.36 ㎡임.

4. 사업기간 : 1984.9.10 - 1985.11.30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40 호

전문건설업 면허취소
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

1985. 10. 25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하여 같은법 제 52 조 제 1 항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 하였기 동시형령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.

업종및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사 유	근거법규
토공 (83-02-519) 도장 (83-05-271), 상하수도 (83-13-252)	(주)동남토공	손돈일	강남구삼성동 107-5	영업정지위반	건설업법 제 52 조 제 1 항 4 호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41 호</p> <p>전문건설업영업정지</p> <p>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52조 1항1호 및 동</p>		<p>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.</p> <p>1985. 10. 2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
<p>다 음</p>						
업종및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사 유	영 정지기간	근거법규
철콘(82-10-335),보링그라우팅(82-14-44)	(주)삼서기업	김원희	강남구방배동 2104	면허기준 미달	85.10.25 - 86.2.24	건설업법 제52조 1항 1호 동시행령 제49조
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p>사 령</p> </div>				<p>1985년 10월 25일자</p>		<p>령제 401 호</p>
성 명	발 령 부 서		현 부 서		직 급	
양규승	<p>복직을 명함.</p> <p>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,2호 규정에 의거 감봉3월에 처함.</p>		<p>마 포 구</p>		<p>토목기과</p>	
<p>서울특별시장</p>						